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협성대학교)의 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삼일학원 (협성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지적사항 없음(표기)>
1. 법인 일반업무관련	3	미회수여음 외 2건	-	지적사항없음
2. 법인수익사업관련	-	-	-	-
3. 학교관련(산단포함)	5	연구년실적물 미제출외 4건	-	-
계	8			

2016년 4월 18일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서문원(인)

감사박종범(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469호)

피감사 기관장

2016년 4월 18일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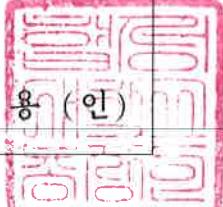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16년 4월 18일

협성 대학교

총장박민용(인)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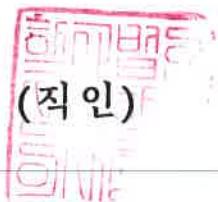
(회계연도 : 2015년 3월 1일 부터 2016년 2월 29일 까지)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1. 우리은행 미회수어음 수표 4매를 회수하여 폐기 등록 하시기 바람.</p> <table border="1"><thead><tr><th>교부일자</th><th>매수</th><th>일련번호</th><th>경과년수</th></tr></thead><tbody><tr><td>1991.11.20</td><td>1</td><td>02801255</td><td>24년5월</td></tr><tr><td>1993.07.01</td><td>1</td><td>05580473</td><td>22년9월</td></tr><tr><td>1993.09.20</td><td>1</td><td>05589590</td><td>22년7월</td></tr><tr><td>1994.09.05</td><td>1</td><td>06866245</td><td>21년7월</td></tr></tbody></table>	교부일자	매수	일련번호	경과년수	1991.11.20	1	02801255	24년5월	1993.07.01	1	05580473	22년9월	1993.09.20	1	05589590	22년7월	1994.09.05	1	06866245	21년7월	<p>1. 우리은행에 미회수 어음 4매를 폐기등록 신청을 하겠습니다.</p>
교부일자	매수	일련번호	경과년수																		
1991.11.20	1	02801255	24년5월																		
1993.07.01	1	05580473	22년9월																		
1993.09.20	1	05589590	22년7월																		
1994.09.05	1	06866245	21년7월																		
<p>2. 기타운영비 최소화</p> <p>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세출항목은 지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기타운영비 집행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람.</p>	<p>2. 예산 편성·집행시 기타운영비를 최소화 하고 해당 지출 계정을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p>																				
<p>3. 사업주(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7%)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니, 산하기관(중,고등학교, 대학교(SK청솔복지관, 어린이집))의 근로자 고용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2.7%)을 고용하시어 미 고용 월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람.</p>	<p>3. 사업주(법인)은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7%)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서 철 (직인)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예산서·운영예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제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일학원의 2016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 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된 사항 :

1. 우리은행 미회수어음 수표 4매
2. 기타운영비 편성·집행 최소화
3.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고용률 2.7%)

2016. 4 . 18 .

학교법인 삼일학원

감 사 : 서 문 원 ①
감 사 : 박 종 범 ②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 사무국장

성 명 : 손 석 오 ③